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1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제2목록 기재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 등 소유 토지 취득 및 세금 납부

○ 피고는 1997. 11. 5. ○○○시 C 일원에 면적 40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위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소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하였다. 피고는 2005. 11. 14. ○○○시 D 일대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B 외 17인(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시 E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 2006. 12. 15.부터 2007. 1. 24.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5,527,380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사업시행자 변경과 F 주식회의 소유권 이전 등

○ 피고는 2009. 1. 28.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F는 2009. 10. 8.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사업시행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 F는 2013. 9. 25.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건축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F와 사이에 F가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를 F로부터 다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토지 중 ○○○시 G, H, I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원고의 소유권 회복 및 세금 납부

○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07구합1051)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제주) 2009누401]과 상고심(대법원 2011두3746)을 거쳐, 2015. 3. 20. 이 사건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그 무효선언의 의미로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 이에 따라 F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중단하였고, F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6. 3. 21.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2016.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2016년도분 7,414,512원, 2017년도분 8,748,864원, 2018년도분 10,146,742원, 2019년도분 14,845,365원, 2020년도분 10,967,246원, 2021년도분 11,193,498원을 부과·고지 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이후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특별자치도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구합459)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775]과 상고심(대법원 2018두59977)을 거쳐, 2019. 1. 31. ○○특별자치도지사와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B 등의 소유권 회복

○ B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1270)을 제기하였다.

○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1. 9. 24. '원고는 B 등에게, B 등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에다가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수용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기발생 및 장래의 차임 상당액의 기발생 및 점유종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지출한 유익비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유익비 상당액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2021. 10. 20.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나10946(본소), 2020나10383(반소)].

마. 피고의 처분 등

○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 11.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이 사건 쟁점 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1경정청구'라 한다)를, 2022. 1. 14.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제2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 2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별지1 제1, 2목록 기재 각 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22. 별지1 제1목록 기재 통지 중 2016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017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23. 12. 20. 별지1 제2목록 기재 통지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별지1 제1, 2목록 기재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하다.

1) 이 사건 재산세는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하 '개정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부과되었던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개정 지방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인 2021. 10. 20.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2022. 1. 11.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제1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이하 '제정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별지1 제1목록 기재 통지(이 사건 제1경정청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관련 규정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서는 경정청구의 기간을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로 정하였는데,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경정청구의 기간을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연장하면서, 부칙 제9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10조에서 '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제5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과 개정 조항의 객관적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나,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연장된 경정청구 기간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전에 종전 2개월의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연장된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일까지 경정청구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3개월의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이에 원고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정청구 사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21. 10. 20.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일인 2017. 3. 28. 종전 2개월의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이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일인 2021. 10. 20.을 기준으로 3개월의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22. 1. 11. 이 사건 제1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이하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별지1 제1목록 기재 통지(이 사건 제2경정청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관련 규정

(1)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적용되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2)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였던 반면, 구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제도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법정의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되는데다가 증액은 물론 감액신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지방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정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 2조에 의하면 제정 지방세기본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하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고,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각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자가 제정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하면서 원활한 조세행정 및 조세안정, 지방재정의 상황, 납세자간의 형평성 이외에 위와 같은 기존 지방세법상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19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12월경 및 2007년 1월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침에 따라 그 무렵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취득세 등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별지1 제2목록 기재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별지1 제2목록 기재 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각 성립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제정 지방세기본법 부칙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 이상 함부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인 이 사건 수용재결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임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에게 기납부한 재산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재산세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제1, 2확정판결은 이 사건 인가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B 등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③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B 등은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의 지급의무만 이행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제1, 2확정판결 및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내용에 비추어 원인무효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가 될 운명이므로, 원고에게 처분 권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당초부터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 즉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산세 부분이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구획정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측량 및 공부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에 따라 B 등에게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권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제2목록 기재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1 제1목록 기재 통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판사 강○○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별지1

제1목록

연번	처분명	처분일	과세대상	구분	납부세액 (환급청구액)
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2022.3.10.	○○○시 J 외 21필지	2016년도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7,414,512원

제2목록

연번	처분명	처분일	과세대상	구분	납부세액 (환급청구액)
2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알림	2022.3.11.	구 ○○○시 E 외 17필지	2006년~2007년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	15,527,380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1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9. 20. 개정법률은 그 부칙에서 2011. 1. 1.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구 지방세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6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